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2 적용 대상

○ (대상)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
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콜라텍·무도장 ▲홀덤펍·홀덤게임장 * 1그룹 전체 집합금지 적용
2그룹(5종)	▲식당·카페 ▲노래(코인)연습장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1종)	▲학원 등 ▲영화관·공연장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 ▲유원시설 ▲오락실·멀티방 ▲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▲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PC방
기타시설(14종)	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숙박시설 ▲파티룸 ▲도서관 ▲키즈카페 ▲돌잔치 ▲전시회·박람회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이·미용업 ▲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콜센터 ▲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○ 2021년 8월 23일(월) 0시 ~ 2021년 9월 5일(일) 24시

4 방역 수칙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- 단,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·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이용(사적모임) 가능(접종 미완료자(최대 2명) 포함 최대 4명)

∘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∘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○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0종(1그룹 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외)에 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과 아래 '추가적용 수칙' 적용**

※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'추가적용 수칙'을 적용

○ **'콜센터', '물류센터'**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**의무사항**임

<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★ 추가 적용 수칙	
▲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(의무)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	○(이용자) -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※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
▲식당·카페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**(편의점* 포함)**	○(이용자) -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 **(편의점* 포함)**

-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	-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	
★ 준수 의무사항	
▲콜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▲물류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

5 법적 근거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 방역수칙 중 '운영시간 제한'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6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**다중이용시설 등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**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**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**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⇩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**으로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기본방역수칙(추가적용 수칙 포함)과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**을 **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(또는 고발조치) 부과 → **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**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